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분야 의제 및 국제협업체 확대 추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도매시장 및 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항만, 해수욕장의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

(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3.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95”를 “598”로, 일반직 계 “591”을 “594”로, 3급 또는 4급 이하 “574”를 “57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935”를 “2,921”로, 일반직 계 “2,824”를 “2,810”로, 3급 또는 4급 이하 “2,801”을 “2,787”로 한다.

별표 5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

원 4명(5급 3명, 6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한시정원) ①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제55조(한시정원) <삭 제>
② 삭제	
③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삭 제>
④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④ ----- ----- ----- ----- 2026년 12월 31 일----- ----- -----.
⑤ ~ ⑧ 삭제	
⑨·⑩ (생략)	⑨·⑩ (현행과 같음)

⑪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삭 제>
⑫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⑫ ----- ----- ----- ----- 2026 년 12월 31일----- ----- -----.
⑬ ~ ⑯ (생략)	⑬ ~ ⑯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5</u>	<u>598</u>	+3
·	·	·	
·	·	·	
일반직 계	<u>591</u>	<u>594</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74</u>	<u>577</u>	+3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35</u>	<u>2,921</u>	△14
·	·	·	
·	·	·	
일반직 계	<u>2,824</u>	<u>2,810</u>	△1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801</u>	<u>2,787</u>	△1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9